의 안 번 호		제	ই
의	결	2020.	•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노 동 위 원 회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외 별도의 시정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근로자 고용 평등 실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관련 시정 절차를 신설 하는 개정을 추진 중임.

현행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업무가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를 추가하여 업무처리 근거를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업무를 추가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부문별 위원회의 처리 사항을 명시하는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 소관사무 추가(안 제2조의2제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 시정에 관한 업무를 노동위원회 소관사무에 추가 명시 나. 노동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처리 사항 추가(안 제15조제4항) 차별시정위원회 처리 사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 명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생 략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우"를 "처우등"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우"를 "처우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circ }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 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1. -----법 . . 「근로기준법 . . 「근로 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 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기 ----, ^[7]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 등에 관한 법률 . . 「남녀고용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률」에 따른 판정・결정・의 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처우등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④ 제1항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④ -----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 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 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 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또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남 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u>한 법률」</u>에 따른 차별적 <u>처우</u> 원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

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다.	<u>처우등</u>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사관계법제과				
연 락	처	044-202-7395		